

#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#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12월 22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12월 22일

3. 제안이유

○ '89. 5월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어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사업을 추진해 오던중 '92. 12. 31. 조례개정으로 '95. 12. 31.까지 연장되었으나,

○ 현재 추진중인 청주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다시 1년간 시한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공영개발사업단 시한연장

1995. 12. 31. ⇒ 1996. 12. 31.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동조례의 부칙조항으로 규정된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존치 시한 규정에  
있어서 그 폐지기한이 '95. 12. 31.자로 시효만료 되는바,

동조례의 존치기한을 '96. 12. 31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추진중인 청주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완결을  
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## 6. 첨 부

.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